

학보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 (원고) 본보에 게재되는 원고는 학내외 학술 논문, 학원 뉴스, 문예 작품, 시사성이 있는 논단, 국내외 학계 동향 등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본교 신학노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 수집)

- ① 투고에 의한 원고 :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청탁에 의한 원고 :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원고의 제목 및 내용을 청탁하여 게재한다.

제3조 (원고 검사) 원고는 편집지도교수와 학생 편집국장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각자 서명을 한다.

제4조 (편집회의) 편집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각 면마다 청탁할 원고의 제목과 내용과 청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제출된 원고와 편집계획에 따라 편집내용을 확정하며, 차기에 발간되는 학보편집 계획안을 심의 결정한다.

제5조 (송고(送稿)) 편집이 완료되면 주간의 승인을 얻어 인쇄소로 원고를 보낸다.(단, 주간의 유고 시에는 편집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조판) 각 면 담당 학생편집위원은 식자(植字)된 원고의 교정을 학생편집국장과 함께 끝낸 후(조판을 완료하고 조판된 원고는 교정을 끝낸 후), 편집지도교수의 최종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인쇄) 지형(紙型)을 끝낸 후 편집지도교수가 검인한 후 인쇄에 회부한다.

제8조 (배포) 인쇄된 학보는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배포한다.

제9조 (원고료) 게재된 원고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는 매 학년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